

보험금 청구서



1. 인적사항 및 안내 방법 선택

피보험자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의료수급권자 여부	☐ 예 ☐ 아니오
					직업 또는 업종			
수익자 보험금 수령인	성명	동일시 상동 기재	주민번호	동일시 상동 기재	실제 소유자여부(*수익자)		☐ 예 ☐ 아니오	
	휴대폰		주소					
	이메일	모든 보험계약의 안내장을 '우편'에서 이메일로 전환합니다. ☐ 동의함					@	
	신원 확인증	● 주민등록증 발급일 : 년 월 일 ● 발급기관명 : ● 운전면허번호 : ● 일련번호 :						
진행단계 문자안내		☐ 신청 ☐ 미신청		안내 방법 (지연/지급 등)		☐ E-MAIL ☐ 스마트 안내(알림톡/LMS) ☐ 우편 ☐ 전화		

※ 안내 방법을 스마트 안내로 체크시, 안내장 형태로 보실 수 있는 URL을 알림톡, LMS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 규정에 의거하여 선택하신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될 수 있으므로, 안내 받으실 주소 정보를 반드시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 관련사항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에 대해 지급 검토합니다. 단,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유형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고유형	☐ 질병 ※ 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 재해 ※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다친 경우	세부유형	☐ 사망 ☐ 장해 ☐ 진단 ☐ 수술 ☐ 입원 ☐ 통원 ☐ 실손입원 ☐ 실손통원 ☐ 기타 :
사고내용 (질병은 제외, 재해일 경우 필히 기재)	● 일시 : 년 월 일 시 ● 사고장소 : ● 사고경위 : ● 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리여부 : ☐ 예 ☐ 아니오		
타사가입여부	● 보험회사 : ● 가입건수 : 건 (실손 가입여부(단체실손포함) : ☐ 예 ☐ 아니오)		
실손통원 의료비 청구시	병명 ※ 통원(외래의료비/처방조제비) 청구시 병명이 2개 이상이면, 영수증 상단에 각각 병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추가적 심사필요 판단시 병명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수령 계좌

※ 외화보험의 사고보험금을 외화로 신청하실 경우, 외화계좌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받으실 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분할보험금 수령안내	● 간병자금, 생활자금 등 분할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확정 분할금을 지급 해당일에 상기 등록 계좌로 자동으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일시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체크 부탁드립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경우 약관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일시금

4. 보험금 접수시 필수 확인사항(확인란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제4항 등 법령에 따라 담당자(연락처)를 안내받고, 예상심사기간과 지급절차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듣고, 별지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 ①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 지연시 보험업법에 따라 전화로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중 일부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 확인

※주의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청구서 허위기재)는 범죄 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체계약자 청구시 명판, 직인(거래인감) 날인	
명 판	거래 인감

20 년 월 일

수익자 서명 (인)

*대리인 청구는 대리인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컨설턴트 [성명 사번 :]

※ 법인/단체 청구건은 별지의 법인/단체 수익자·실제소유자확인서를 작성·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SAMSUNG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 합니다.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보험, 융자, 수익증권, 신탁, 퇴직연금 등)에 대한 ①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 662 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뜻합니다.

본 동의서는 요약 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 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요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에만 동의 해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 지급 및 심사(손해사정, 의료자문 포함),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 년까지

-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 거래 종료후 5 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합니다.

I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4 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민감정보 (2 개)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사기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16 개)	일반개인정보(10 개)		신용거래정보(6 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보험계약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25 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금융거래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 지원,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업무 수행, 재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위·수탁 사무 수행 포함), 의료심사 및 자문 업무 수행, 소견서 발급,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수행, 금융거래업무,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4 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민감정보 (2 개)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사기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16 개)	일반개인정보(10 개)		신용거래정보(6 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보험계약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3 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조회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4 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민감정보 (1 개)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7 개)	일반개인정보(2 개)		신용거래정보(5 개)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피보험자	(성명)	친권자	(부)(성명)	(모)(성명)
수익자	(성명)	후견인	(성명)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친권자 2인의 경우 각각 기재하며, 다수의 수익자(다수의 상속인 등)의 경우 상기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성명 기재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 합니다.

-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에만 동의 해주셔도 됩니다.
-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 지급 및 심사(손해사정, 의료자문 포함),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이체 및 입출금 업무), 증빙서류 보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 년까지
 -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 거래 종료후 5 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합니다.
- *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보험, 융자, 수익증권, 신탁, 퇴직연금 등)에 대한 "①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 662 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뜻합니다.

I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민감정보	①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진단명 등) ②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서류,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손해사정서 등) 포함)				
	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 신고번호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지급 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공공기관 등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외국 재보험사 국내지점, 공제사업자, 우체국, 당사로 부터 보험금 지급·심사(보험사고 조사 포함)를 위탁받은 자,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손해사정 업체)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당사의 이체의뢰 은행 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 포함) 기타 : 의료기관, 법률사무소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위·수탁사무 수행 포함),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 계약 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기타 : 의료심사 및 자문 업무수행, 소견서 발급,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I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민감정보	①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진단명 등) ②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서류,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손해사정서 등) 포함)				
	위 <u>민감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 신고번호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지급 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 조회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는 '2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자' 참고 바랍니다.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진단명 등)				
	위 <u>민감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성명, 국내거소 신고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지급 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 동의함	수익자	☐ 동의함

피보험자	(성명)	친권자	(부)(성명)	(모)(성명)
수익자	(성명)	후견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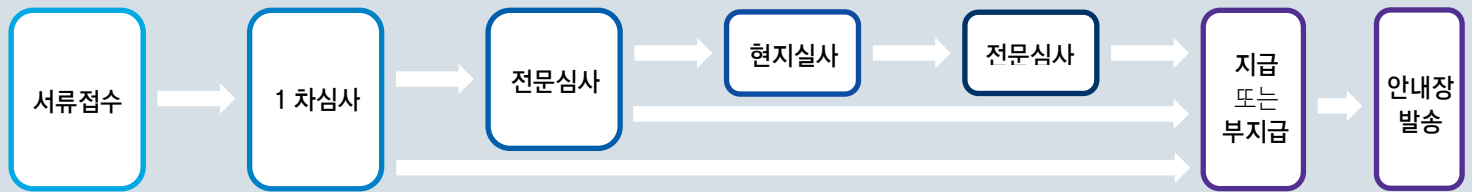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친권자 2인의 경우 각각 기재하며, 다수의 수익자(다수의 상속인 등)의 경우 상기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성명 기재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 (고객보관용)

보험금 심사절차 안내



- ※ 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조사업무 등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조사·조회 및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심사전문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은 보험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삼성생명에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의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 삼성생명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의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삼성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삼성생명이 보험사고 통보(제 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를 받은 날부터 7 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삼성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님의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통보하게 되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발생시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 담당자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 등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사 지급기일은 3 일 또는 10 일 이내이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사를 위해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의료심사

장해, 진단급부 등 청구시 의료재심사 또는 제 3 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상법 제 662 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심사 진행상황 안내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life.com>)를 통해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서류와 관련한 사항은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병원발급서류는 병명, 병원직인,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는 원본기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내방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단, 수익자 본인 내방 또는 수익자 본인 계좌송금 시 제외) - 기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배우자, 자녀 보장상품은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 FAX, 사본 접수 가능대상(사망/장해/진단 제외) - <u>진료비계산서상 본인부담총액 100만원이하</u> <u>(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서류 추가 제출 필요)</u> - 또는 <u>청구금액 100만원이하, 통원은 금액 제한 없음</u> ※ 법인·단체수익자의 경우는 수익자·실제소유자 확인서 <u>必첨부</u> ※ 자금세탁방지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진단서	사 망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재 해 입증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기 타	
발 급 처		해당 의료기관				관공서 * 민원24참고		- 재해입증이 가능한 관공서 서류로 대체가능(교통사고사실확인 등) ※ 민원 24(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	
사망	일반사망		●				●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상기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시 생략가능)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상속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舊(구) 제적등본 ·사망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이혼/재혼했을 시 前(전)호주 제적등본 ·수익자가미성년자시 미성년자기증의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재해사망		●			●	●		
장해	일반장해			●				- 팔·다리관절 :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 - 척추장해 ·'05.4.1 일 이전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포함)기재 ·'05.4.1 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단, '99.2.1 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 (일반)진단서 대체가능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 ·인공관절치환(치환일자, 부위 기재) ·신장, 비장 적출 시(적출일자, 부위 기재)	
	재해장해			●		●			
입원		●			●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일자 기재) -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 암입원의 경우 필수불가결 또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확인 되는 서류	
수술	재해수술	●			●	●		- 재해입증서류(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일자, 방법 등 기재) - 신수술보장특약N : 진료비계산서, 급여수가코드 (EDI 포함) 명시된 진료비세부내역서(회사양식의 급여수가코드(EDI 코드 포함) 확인서로 대체 가능)	
	중수술	●							
골절		●			●	●		- 골절 확인에 한함(의증 제외) - 진단서(or 소견서) 또는 입퇴원(통원)확인서(진단명, 일자 등 기재)	
통원		●			●	●		- 진단서(or 소견서 및 진료차트) 또는 통원확인서(진단명, 일자 등 기재) - 정액통원(암/재해/특정장병)은 FAX 접수, 복사본 가능 - 재해통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치료	교통재해	●				●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 자동차보험사)	
	상해치료	●				●		-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 - 진단서 또는 입퇴원(통원)확인서(진단명, 일자 등 기재)	
진단	암	●	- 암 진단 확인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간/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대체가능 - Stage CI 진단서: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별첨) or 암 병기 명시된 서류(진단서/소견서) *표기 방식 : 종합병기/개별 T,N,M(例: 4기/T3N2M1) 단, TNM 병기 분류 불가시 대체병기 기재						
	뇌졸중	●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	-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해외병원		- 기본 제출서류는 국내와 동일함 -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 ※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상									
구 분		진단서 (병명확인서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기 타			
발급처		해당 의료기관					- 실손보험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불가		
실손입원		●	●	●		-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병명 있는 입퇴원확인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			
실손 통원	외래의료	●	●	●		- 실손통원(외래, 처방)의 경우 FAX 접수, 복사본 가능 - 본인부담금: 외래, 처방 합산/ 동일상병 기준 - 본인부담금 10만 이하: 보험금청구서에 병명만 기재(진단서 대체) 본인부담금 10만 초과: 병명확인서류(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 제출 (단, 응급의학과, 치과, 한방과 진료 청구 건 제외)			
	처방조제	●			●	- 다수 건일 경우 일자별/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필요 - 선택진료비 외 비급여합계금액 5만 이상: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 17년 4월 1일 이후 개정실손 : 진료비세부내역서 必구비 (개정실손이 포함된 중복계약 포함)

※ 진단서사 대체 가능한 서류는 기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해입증 서류 등

문의사항은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센터 내방 가능 시간은 09:00~16:00(단, 현금성 업무는 15:30 까지)입니다.

삼성생명

SAMSUNG